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대학은 우송정보대학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 대학은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자양동 226-2)번지에 둔다.

제4조(설치학과(부)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과(부)**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모집단위명 | | 입학정원 | | 모집단위명 | | 입학정원 | | |
|----------------|------------|------|----|----------|------------|-------|----|--|
| | | 주간 | 야간 | | | 주간 | 야간 | |
| 간호과 | | 75 | | 실용음악과 | | 60 | | |
| 경호보안과 | | 60 | | 아동보육과 | | 60 | | |
| 귀금속디자인과 | | 40 | | 애완동물학부 | 동물관리전공 | 70 | | |
| 글로벌명품조리과 | | 30 | | | 애견미용케어전공 | | | |
| 기계자동차 설비 학부 | 기계전공 | 180 | | 언어재활과 | | 40 | | |
| | 에너지클린룸설비전공 | | | 영상콘텐츠과 | | 40 | | |
| | 자동차전공 | | | 외식조리과 | | 80 | | |
| 기계전자자동화과 | | 60 | | 유아교육과 | | 120 | | |
| 리모델링건축과 | | 50 | | 전자정보과 | | 100 | | |
| 병원행정과 | | 90 | | 제과제빵학부 | 제과제빵실무전공 | 80 | | |
| 뷰티디자인학부 | 메이크업전공 | 180 | | | 제과제빵창업전공 | | | |
| | 피부관리전공 | | | 조리부사관과 | | 40 | | |
| | 헤어디자인전공 | | | 철도운수경영과 | | 80 | | |
| 사회복지과 | | 85 | 30 | 철도차량·운전과 | | 80 | | |
| 사회체육과 | | 40 | | 철도토목과 | | 60 | | |
| 샵마스터·유통경영과 | | 80 | | 컴퓨터정보과 | | 80 | | |
| 세무정보과 | | 60 | | 호텔관광학부 | 글로벌관광서비스전공 | 180 | | |
| 소방안전관리과 | | 70 | | | 호텔외식경영전공 | | | |
| 시각디자인과 | | 40 | | | 호텔웨딩컨벤션전공 | | | |
| 식품영양 조리학부 | 식품영양전공 | 80 | | 호텔서비스사관과 | | 60 | | |
| | 조리과학전공 | | | | | | | |
| 합 계(2,480) | | | | | | 2,450 | 30 | |

제4조의2(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훈련과정 및 학과(이하 '계약 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3(계약에 의한 학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①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별도로 편성하고, 자세한 내용은 산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계약학과 등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칙 제31조(졸업 및 수료)에 따른다. 단, 계약학과 등에 입학한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계약학과 등의 수업은 산업체의 학습실과 본 대학에서 출석수업과 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조의4(계약학과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①계약학과에 입학(재입학 포함)할 수 있는 자는 본 학칙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 선발절차는 본 학칙과 제 규정에 따르되,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4조의5(계약학과 학생정원)

①제4조의4제1항제2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편성 및 입학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제4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의6(계약학과 운영경비 및 부담) ①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교 산학협력단 경비로 충당한다.

②운영경비는 제1항의 경비 외에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을 포함한다.

제4조의7(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제4조의4제1항제1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제4조의4제1항제2호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의8(계약학과 학기 및 수업일수) ①계약학과 등의 학년 및 학기는 본교 학칙 제8조(학기운영), 제9조(수업일수)에 따른다.

②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③기타 사항은 본교 학칙 제3장에 준한다.

제4조의9(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 ①해당학과 등의 설치·운영기간은 2년(4학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학과의 학생 중에 본교 학칙 및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규정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사정에 통과한 자에게는 본교 학칙 제31조(졸업 및 수료)의 서식에 의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조의10(계약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계약학과가 설치·운영 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관련 학과에 소속시키며, 당해 계약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업이수, 납입금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대학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학칙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장 수업년한과 재학년한

제5조(수업년한) ①본 대학의 수업년한은 2년 또는 3년으로 한다.
②간호과와 언어재활과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
③본 대학의 수업년한은 4분의 1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학년한) 재학년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제7조(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 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운영) ①학기는 1학기, 2학기로 나누되 **학과(부)**의 특성에 따라 다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계 및 동계방학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9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천재, 지병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0조(휴업일) ①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3. 개교기념일 : 10월 15일

②하계방학 및 동계방학기간은 매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총장은 비상재해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총장은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 수업 등을 과할 수 있다.

제4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11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 선 이내로 한다.

제12조(입학자격)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3조(입학지원) ①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증명서
2. 최종학교장의 성적증명서
3. 출신학교장의 추천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14조(입학전형) ①신입학자는 출신 고등학교 장의 내신 성적과 다음 각 호중 총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한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
2. 대학별 고사
3. 면접고사
4. 실기고사
5. 적성검사
6. 신체검사

②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4조의2(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 대책위원회를 둔다.

②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3(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제도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입학허가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이중학적을 가진자
3. 입학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제16조(편입학) ①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 2학년초 수업개시일로부터 **1/4선** 이내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학생과 군복무중 폐과된 **학과(부)**학생의 편입학은 학기개시 **1/4선**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②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모집이 가능하며, 편입학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의2(전과) ①교내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1학년 2학기초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재학기간동안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2학년 1학기초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허가 할 수 있다.**

②전과는 전입학과, 전출학과의 입학정원 10%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단, 유아교육 및 간호·보건계열의 경우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③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의 전공 5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전과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삭제

⑤삭제

제17조(재입학) ①제적(자퇴자 포함)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적된 자 중 제2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에 해당하는 제적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②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1·2학년 학생 중 제적자 총수에서 편입, 재입학자 총수를 제외한 인원만큼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교원양성과 관련된 학과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③재입학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로 한다.

제18조(등록) 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기일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휴학, 퇴학 및 제적

- 제19조(휴학 및 복학)** ①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4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을 할 수 있다.
- ②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 또는 본 대학이 지정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휴학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연장 휴학 할 수 있다.
- ④병역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휴학기간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휴학을 허가 할 수 있다.
- ⑥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 ⑦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후** 전역예정자중 전역 전에 수업참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및 휴가증 등을 첨부하여 복학 할 수 있다.**

제20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단, 제7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1/4선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3. 삭제
4. 통산 3회 이상 학사경고자로서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개강후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제6장 교과, 수업 및 평생교육

제22조(교육과정) ①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 **일반교과**로 구분하며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20%, 전공교과 80%~90%로 하고 전공교과의 50%는 실험실습을 과할 수 있다. **단, 일반교과는 필요시 개설 할 수 있다.**

- ②전공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본 대학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③현장실습은 전공필수로 **한다. 단, 총장의 허가를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식품영양조리계열은 식품영양전공과정으로 운영한다.

제22조의2(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본 대학과 연계협약이 맺어진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의3(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전문학사과정에 외국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협약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비정규특별과정 운영) ①본 대학에는 3개월 내지 1년 과정의 비정규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비정규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해서 설치한다.

③비정규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후 운영한다.

제23조의2(시간제등록생) ①제12조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본 대학에 등록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인원, 선발방법, 이수학점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3조의3(평생교육과정 등의 운영) ①본 대학에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평생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3조의4(전공심화과정의 운영) ①본 대학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하여 전공심화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3조의5(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①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시킬 수 있다.

②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3조의6(학점은행제) ①본 대학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8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중 본 대학에서 50학점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7(현장실습(인턴십) 학점인정) 국내 및 국외 **현장실습(인턴십)**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교과이수 및 학점취득) ①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 실기, 체육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②수업년한 2년제 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80학점 이상으로 하고 수업년한 3년제 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이하를 이수할 수 있다. 단, 다학기제 적용계열 및 학과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하계 또는 동계방학 기간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22조제3항에 의한 현장실습 학점은 1~20학점의 범위내에서 인정하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삭제

⑦삭제

⑧본 대학과 약정된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⑨군 복무중인 휴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출석 및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⑩신입학자 중 국내·외의 타 대학(교) 및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관련학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양·전공과목 학점에 한하여 졸업학점의 10% 범위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수업) ①매학기의 개설과목은 그 학기 수업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②개설강좌는 08:00부터 22:30분까지 개설·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6조(평가시험) ①성적평가는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각 교과목 총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27조(성적) ①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②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교과목 성적이 Do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9 단 계 평 점 방 법

| 등 급 | 배 점 | 평 점 | 등 급 | 배 점 | 평 점 |
|-----|--------|-----|-----|-------|-----|
| A+ | 100-95 | 4.5 | Co | 74-70 | 2.0 |
| Ao | 94-90 | 4.0 | D+ | 69-65 | 1.5 |
| B+ | 89-85 | 3.5 | Do | 64-60 | 1.0 |
| Bo | 84-80 | 3.0 | F | 59이하 | 0 |
| C+ | 79-75 | 2.5 | P | | 불계 |

③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성적평가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8조(진급인원) 삭제

제29조(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 일 때는 이를 취소한다.

제30조(학사경고) 학기말 성적평가 결과 평점평균이 1.25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 처분한다.

제31조(졸업 및 수료) ①본 대학에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제2항의 졸업 학점이 충족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②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학칙 제24조제2항에 위배되어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4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8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120학점 이상

④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31조의2(조기졸업) ①본 대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제2항의 졸업학점을 충족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②조기졸업 희망자는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개강후 4주 이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기졸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2조(유급) ①삭제

②삭제

제8장 학생활동

제33조(학생회 준칙)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여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족과 인류문화 창달에 공헌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학생회를 두며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34조(학생회 회비)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학생회 이외의 학생단체 승인)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행위, 시위, 성토,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37조(학생지도) 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며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39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처벌)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 포함 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40조의2(장애학생의 지원) ①본 대학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수업 및 대학내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애학생의 지원 및 장애학생지원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9장 규율과 상벌

제41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서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42조(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질병으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종합병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4조(징계) ①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이 학칙을 위반한 자
2. 무단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자

②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10장 납입금

제45조(납입금) ①학생은 매학기 등록시기에 소정액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실험 또는 실습비, 학생자치회비,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납부한 납입금 중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장애학생 학점등록) ①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 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②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의3(등록금심의위원회) ①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6조(납입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군사원호 대상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장 장학회

제47조(장학금) ①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평균 B급 이상인자로서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학업성적이 평균 C급 이상인자로서 생활이 극빈한 자

②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제12장 교수회

제48조(구성) ①본 대학 학사 및 학생생활지도 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와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교수회는 교원으로 조직하고,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학생복지처장, 산학협력단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및 기획처(실)장으로 조직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49조(소집 및 기능) ①교수회 및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교수회 및 교무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며, 교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입학, 진급, 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장 직 제

제50조(교직원) ①본 대학에는 총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교원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과 조교를 두며, 교원과 조교는 제4조에 의한 **학과(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초빙교원,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1. 초빙교원: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공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당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2. 겸임교원: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공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시간강사: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로서 전공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③총장은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임용 및 평가할 수 있다.

1. 임무: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학협력 정책제안, 산학협력 관련 외부사업의 기획 및 운영, 산업기술 정보제공,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지도, 학생 현장실습 지도, 산학협력 교육 등의 산학협력 사업 활동 전반에 전념하여야 한다.

2. 임용 및 지정방식

가. 신규임용 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우송학원 이사장이 임용한다.

나. 이 규정 시행 이전 임용된 전임교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제반사항은 교원인사규정에 의한다.

3. 평가: 산학협력중점교원의 평가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며, 산학협력 관련 임무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교원의 승진, 재임용, 연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4. 산학협력중점교원과 관련하여 학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50조의2(교직원의 임무) ①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교원은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만 전담할 수 있다.

③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51조(조직) ①본 대학에는 교무처, 입학홍보처, 학생복지처, 산학협력단, 총무처, 관리처, 기획처(실) 및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각 처(단, 실)에 처(단, 실)장을 보하고 처(단, 실)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처(단, 실)내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③각 처(단, 실)의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장 부속기관

제52조(부속기관) ①본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삭제
2. 삭제
3. 도서관
4. 기숙사
5. 삭제
6. 삭제
7. 학생경력개발센터
8. 삭제
9. 교수학습지원센터
10. 인성개발원
11. CS교육원
12. 학생코칭센터
13. 우송예술회관
14. 사회봉사단
15. 장애학생지원센터

②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52조의2(산학협력단) ①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우송정보대학 산학협력단을 설립·운영 한다

②제1항의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의 법인 정관 및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2조의3(학교기업) ①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의 계열 및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②학교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52조의4(학교기업 설치) ①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그 명칭을 우송정보대학 '우송 애완동물센터 학교기업'이라

한다.

②우송 애완동물센터 학교기업은 교지 및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41-1번지에 설치한다.

③우송 애완동물센터 학교기업은 애완동물계열과 연계하여 통계청고시 표준산업분류상의 축산관련 서비스업을 사업 내용으로 한다.

제52조의5(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우송 애완동물센터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제24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시행한다.

②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의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의6(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①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②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⑤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장 기 타

제53조(학칙 제·개정 절차) ①학칙을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③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학칙에 따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제반 학칙의 공포는 교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

제54조(성폭력 예방) ①본 대학 구성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55조(자체평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대학자체 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부)별 전문학사 학위 종별 현황

| 학과(부) | | 학위 | 학과(부) | | 학위 |
|----------------|------------|----------------|-------------|------------|----------|
| 간호과 | | 간호전문학사 | 실용음악과 | | 음악전문학사 |
| 경호보안과 | | 경호전문학사 | 아동보육과 | | 보육전문학사 |
| 귀금속디자인과 | | 디자인전문학사 | 애완동물 학 부 | 동물관리전공 | 애완동물전문학사 |
| 글로벌명품조리과 | | 외식조리전문학사 | | 애견미용케어전공 | |
| 기계자동차 설비 학부 | 기계전공 | 공업전문학사 | 언어재활과 | | 언어재활전문학사 |
| | 에너지클린룸설비전공 | | 영상콘텐츠과 | | 예술전문학사 |
| | 자동차전공 | | 외식조리과 | | 외식조리전문학사 |
| 기계전자자동화과 | | 공업전문학사 | 유아교육과 | | 교육전문학사 |
| 리모델링건축과 | | 공업전문학사 | 전자정보과 | | 공업전문학사 |
| 병원행정과 | | 보건전문학사 | 제과제빵 학 부 | 제과제빵실무전공 | 제과제빵전문학사 |
| 뷰티디자인 학 부 | 메이크업전공 | 미용전문학사 | | 제과제빵창업전공 | |
| | 피부관리전공 | | 조리부사관과 | | 조리전문학사 |
| | 헤어디자인전공 | | 철도운수경영과 | | 경영전문학사 |
| 사회복지과 | | 사회복지전문학사 | 철도차량·운전과 | | 공업전문학사 |
| 사회체육과 | | 사회체육전문학사 | 철도토목과 | | 공업전문학사 |
| 샵마스터·유통경영과 | | 샵마스터경영 전문학사 | 컴퓨터정보과 | | 공업전문학사 |
| 세무정보과 | | 세무회계전문학사 | 호텔관광 학 부 | 글로벌관광서비스전공 | 관광전문학사 |
| 소방안전관리과 | | 공업전문학사 | | 호텔외식경영전공 | |
| 시각디자인과 | | 디자인전문학사 | | 호텔웨딩컨벤션전공 | |
| 식품영양 조리학부 | 식품영양전공 | 식품영양조리 전문학사 | 호텔서비스사관과 | | 호텔경영전문학사 |
| | 조리과학전공 | | | | |